

감리지적 사례 FSS/2008-23 :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 결정일 : 2017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조선업을 영위하는 D사(이하 회사)는 X3년과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선박 건조대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는 약정이 체결된 매출채권을 장기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기간경과별로 설정된 임의의 대손률을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기간 경과별 대손률

| 6개월~1년 | 1년 ~ 2년 | 2년 ~ 3년 | 3년 ~ 4년 | 4년 ~ 5년 | 5년 이상 |
|--------|---------|---------|---------|---------|-------|
| 10% | 20% | 30% | 50% | 70% | 100% |

이후 X5년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하면서, 관련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개별평가로 바꾸었으나, 이를 전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에서 상환유예약정을 맺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간 경과별 임의대손률을 적용함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5년에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면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X5년 대손상각비 및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손상이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선사별 신용도/재무상황/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임의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 충당금을 인식하였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41에 따르면 전기오류는 소급 재작성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였음에도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측정 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성 매출채권을 개별 평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계속 기간경과에 따른 대손 설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고 주장하자, 이를 용인하였다.

5. 시사점

대손충당금 설정시 거래처의 신용도, 재무상황,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회수가능성 평가(개별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개별채권의 손상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 사유일 수 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특정 선박에 대한 채권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선주사의 누적 대손률만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선박 프로젝트별로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회계기준에 부합한다.

잘못된 회계 추정치 산출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닌 오류의 수정으로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 추정치 산출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 수정이다. 본 사례와 같이 잘못된 회계 추정치 산출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이를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